

서울고등법원 2021. 11. 23 선고 2021나20171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김재권

피고, 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병은

변 론 종 결 2021. 10. 26.

판 결 선 고 2021. 11. 23.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가합10587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8,670,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12. 29.'를 '11. 29.'로, 제3쪽 제10행의 '2015. 7. 3.'을 '2014. 7. 3.'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E가 제1매매계약의 명의수탁자로서 D 등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이를 사후에 추인하였으므로, 제1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무권대리 여부 및 추인 여부가 쟁점이었을 뿐, E가 명의수탁자로서 토지 매수 및 담보 설정 권한을 위임하였는지는 쟁점이 아니었던 반면, 관련 형사소송에서 명의수탁자로서 토지 매수 및 담보 설정 권한을 위임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어 E가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관련 형사소송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E가 자신의 명의로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하였거나 나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이를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로서는 이 사건 경매가 무효라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일 뿐 악의의 수익자가 아닌 점, 관련 형사소송과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가 상반되었던 점,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과 제2심의 결론도 상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E가 D 등에게 자신의 명의로 제1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이유로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율은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C이 E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1매매계약은 D 등이 무권대리행위로서 체결하였고, E가 사후에 추인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 그 결과 제1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E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C이, 제1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 독립당사자로서 참가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제1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로 하여금 C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선행소송은 관련 형사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후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E의 진술증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서류들, 이행각서(2014. 7. 2.자 이행각서, 2014. 9. 4.자 토지매매에 관한 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 등이 모두 제출되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무권대리 여부 및 추인 여부만 쟁점이 되었을 뿐 명의대여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E의 명의대여에 관해서도 주장하였음에도(갑 제8호증), 제1매매계약이 D 등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해 체결되었고, 사후에 E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E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사업을 진행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D 등이 E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체결 권한을 수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쟁점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1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의 유무 및 그 추인 여부로 돌아가는 점,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선행소송과 이 사건은 모두 E가 D 등에게 자신의 명의로 제1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는지 또는 사후에라도 이를 추인하였는지를 주된 쟁점으로 삼고 있어 분쟁의 기초가 같고,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 판결 및 그 집행 결과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전제가 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증거들이나 주장들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미 제출되거나 쟁점이 되어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사실인정을 뒤집어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2)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피고가 어떤 취지로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 주장처럼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는 받은 금액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위 주장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무효로 판단한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내주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고, C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확정된 점, 위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점, 피고로서도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분을 받음으로써 알게 된 점, 실제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C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소송이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이나 쟁점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점, 아주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제1심이 원고의 청구금액 거의 전부를 인용하였고, 그 차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1심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산정하였음에도 소수 다섯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방법으로 계산함으로 인한 것일 뿐이 지 피고의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호재, 판사 김갑석, 판사 김민기